

1. 개정이유

노인 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절차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
충당 세부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나. 소액의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 세부절차 마련(안 제34조의2)

1)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에 있어 잔여재산 포함 범위, 잔여재산 공고 방법,
지자체로 귀속된 재산의 처리방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 ①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 중당은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장례절차와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장례 방식은 사망자의 특별한 유언이나 유증 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법 제48조제1항의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은 사망 시점의 유류재산으로 현금, 예·적금, 현금성 자산, 부동산, 귀금속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 당시 사망자의 잔여재산 평가액이 500만원(장례비 사용금액 포함)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사망자의 장례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사망자의 잔여재산 목록과 장례비 사용내역, 장례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 일체를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함) 에 한 차례 이상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의2(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 ①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 중당은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장례절차와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장례 방식은 사망자의 특별한 유언이나 유증 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u><신 설></u>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법 제48조제1항의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은 사망 시점의 유류재산으로 현금, 예·적금, 현금성 자산, 부동산, 귀금속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 당시 사망자의 잔여재산 평가액이 500만원(장례비 사용금액 포함)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사		

망자의 장례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사망자의 잔여재산 목록과 장례비 사용내역, 장례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 일체를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함)에 한 차례 이상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